


<b>대학평의원회 회의록</b>	결재	의장 
	장소	집현관10층 소회의실

2017년 8월 18일 금요일 11:30 ~ 13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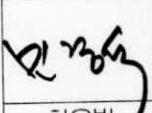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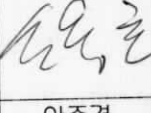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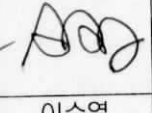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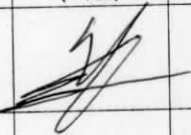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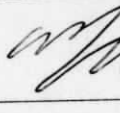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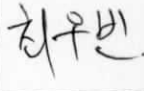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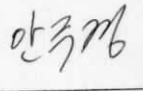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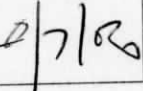
안건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1. 회의 내용

- 이경근 의장이 출석의원이 재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
- 기획과 이수열 과장이 대학평의원회 안건에 대해 설명함.

(1) 학칙 개정(안) 심의

- 학적과 한영교 주임이 학칙 개정(안에 대하여 설명함.
- 제7조(학년 및 학기), 제37조의 2(연계전공), 제37조의 3(제2전공), 제48조(학위수여), 별표#2-1(연계 전공별 학위수여 종류)의 개정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, “연계전공”을 “연계 융합전공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임을 설명함
- 제8조(수업일수)의 개정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,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기 위해 수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임을 설명함. 집중이수제는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간에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, 학정당 이수시간(15시간 이상)은 지켜야하고, 집중이수제를 하더라도 4년 졸업연한에는 변동이 없음을 설명함.
- 이경근 의장 : “연계융합”이라는 용어보다는 “연계 및 융합” 또는 “연계·융합”이라는 용어가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. 제7조제2항의 개정 용어 중에 “전공별 혹은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”에서 “학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”는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용어상의 모호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한영교 주임 : “학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”는 전공별 혹은 학년별로 학기의 수를 다르게 운영 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설명함.
- 최우빈 의원 : 학칙 개정(안)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.
- 한영교 주임 : 학칙 개정(안)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하부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함.
- 이양희 의원 : 유연학기제, 집중이수제 등의 시행은 교수, 학생, 직원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시행할 경우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

	민경석 (교원)	서용호 (교원)	안윤영 (교원)	유상호 (교원)	이양희 (직원)	유병국 (직원)	장덕상 (동문)	이재욱 (동문)
의원 및 간사								
	최우빈 (학생)	안주경 (학생)	이수열 (간사)	이기영 (서기)				
								

회의내용

(2)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- 기획과 이수열 과장이 (별표1)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, (별표3)특수대학원 각 과정별 학과(전공) 편성 및 입학정원, (별표4)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, 학과별 수여학위명, (별표6)특수대학원 각 과정별 학과(전공) 편성 및 입학정원, 부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함.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영·회계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하고, 박사과정의 경영학과, 회계학과를 경영학과로 통합함을 설명함.
-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식품공학과를 식품생명공학과로 변경하고,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디지털콘텐츠학과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변경함을 설명함.
- 산업대학원 골프·리조트경영학과를 스포츠산업학과로 변경함을 설명함.
-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함을 설명함.

2. 기타

- 최우빈 의원 : 수업과 공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.
  - 수강 신청시에 교수님들께서 강의계획서를 학사 시스템에 안올리시는 경우가 많음. 모든 과목에 대해 강의 계획서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.
  - 과목 수강 신청 시에 필수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이 너무 적어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.
  - 강의가 폐지될 경우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. 강의 폐지시에 학생들에게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해줄 것을 건의함.
  -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이 많아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.
  - 이노베이션센터의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이수열 기획과장 : 수강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수업과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함.
- 이양의 의원 : 이노베이션센터 공간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최우빈 의원(학생회장)과 면담을 가지기로 함.

3. 회의 결과

- 학칙 제7조, 제8조, 제37조의 2, 제37조의 3, 제48조, 별표#2-1 개정(안)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.
-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(별표1), (별표3), (별표4), (별표6), 부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.

4. 폐회선언

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.

5. 회의자료

- 2017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1부. 끝.